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

발 의 자:이병진・이재관・이연희

박주민 · 임호선 · 윤준병

복기왕 • 윤후덕 • 이원택

권칠승·강유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도에 발간된 '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'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, 수온 양극화로 인하 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.

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,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.

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,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.

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

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(안 제3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5조의2(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·어촌 영향 등 평가)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 (이하 "기후영향평가등"이라 한다)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 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·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

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위임하거나, 그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5조의2(기후변화에 따른 수산
	업·어촌 영향 등 평가) ① 해
	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
	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
	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
	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
	성을 5년마다 평가(이하 "기후
	영향평가등"이라 한다)하여 그
	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
	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	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
	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
	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
	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	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
	<u>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</u>
	의 장 및 수산업・어촌 관련
	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
	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
	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
	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	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
	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

<u>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</u>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<u>야 한다.</u>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, 그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 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.